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92 발의연월일: 2021. 4. 23.

발 의 자 : 임이자·박대수·송언석

金炳旭・박덕흠・정진석

백종헌 • 하영제 • 박형수
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재까지 국가 주도형 건설 중심의 댐 정책의 결과로 주요 유역들은 이·치수의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,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댐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현재 대다수의 댐이 준공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급속 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운 영을 위한 실천적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 는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

이에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따른 효율적·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·수질·수생태를 포괄하는

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한편, 노후 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 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제명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을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하여,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조).
- 나.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·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.
 - 1) 현행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댐과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4조에 따른 발전용 댐을 댐관리기본 계획 수립 대상 댐으로 정함(안 제3조제2항).
 - 2) 댐관리기본계획은 댐 시설의 관리계획, 댐 저수 운영, 물환경보전계획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10년마다수립하도록 하되,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·반영하도록 함(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).
 - 3) 댐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 수립하되, 관계 중앙행정기

관이 관리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수립하여 제출한 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(안 제4조제3항).

- 4)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,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관할하는 댐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·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함(안 제4조의2).
- 다.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 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함(안 제10조).

법률 제 호

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"을 "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"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"댐관리"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·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.
- 1.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
- 2. 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발전용 댐

제2장제1절의 제목 중 "건설"을 "관리 등"으로 한다.

제15조 앞의 "제2절 댐의 관리"를 삭제하고, 제4조,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9조의2,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,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0조, 제11조

부터 제13조까지, 제13조의2,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8조, 제5조부터 제8조까지,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(댐관리기본계획) ①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의 보 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리기본계획 (이하 "댐관리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댐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침
 - 2. 댐시설의 관리 계획
 - 3.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(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물 환경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보전 계획
 - 4.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(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 한정한다)
 - 5.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
 -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(해당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

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
-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의2(댐관리세부시행계획) ① 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(이하 "세부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 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

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종전의 제17조)제1항 중 "제16조"를 "제6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 2항 전단 중 "제15조제2항"을 "제5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9조의2(종전의 제18조의3)제1항 중 "댐건설장기계획"을 "「물관리기본법」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"으로 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4조)의 제목 "(댐건설장기계획)"을 "(댐건설의 적정성검토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4항) 중 "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"를 "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및 그밖에"을 "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

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,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(이하 "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 획"이라 한다)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(종전의 제7조)제1항제12호 중 "제9조제1항에"를 "제13조제1항에"로 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9조)제1항 전단 중 "제7조제1항"을 "제11조제1항"으로, "제7조제4항"을 "제11조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8조제1항"을 "제12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전단 중 "제7조제1항제12호"를 "제11조제1항제12호"로 한다.

제13조의2(종전의 제9조의2)제1항 중 "제9조제3항"을 "제13조제3항"으로 한다.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9조제3항"을 "제13조제3항"으로 한다. 제15조(종전의 제11조)제2항 중 "제7조제4항"을 "제11조제4항"으로 한다. 제16조(종전의 제12조)제4항 중 "제9조제2항"을 "제13조제2항"으로 한다. 제17조(종전의 제13조)제3항 중 "제12조"를 "제16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제8조"를 "제12조"로, "제12조"를 "제16조"로 한다.

제19조 앞의 "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"를 "제2절

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"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제12조제1항"을 "제16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24조제4항 중 "제12조"를 "제16조"로 한다.

제31조제5항 중 "제7조제4항"을 "제11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38조제2항제2호 중 "제7조제1항제2호"를 "제11조제1항제2호"로 한다.

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2조제1항"을 "제16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15조제2항"을 "제5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49조 중 "제18조"를 "제8조"로 한다.

제51조 중 "제10조제3항"을 "제14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"제10조제1항"을 "제14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2항・

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3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34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

-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-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118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4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"으로 한다.

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후단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41조제1항제4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"으로 한다.

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제2호 및 제20조제3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⑥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"를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하고,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2호"를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2호"를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호"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제2호"를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호"로 한다.

제20조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⑦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카목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⑧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본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

-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- 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7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 전단 및 후단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3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 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제4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"으로 한다.

③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사목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①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 3조"를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 1항"으로 한다.

⑤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각각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(b)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제1항제6호·제7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⑰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"를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"로한다.

®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4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」 제5조제1항"으로 한다.

⑩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·제8항 및 제27조제1항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부터 제18조까지"를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」 제5조부터 제8조까지"로 한다.

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 전단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"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아 혅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"댐관리"란 이 법의 적용을 <신 설>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・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 4. (생략) 5. (현행과 같음) 제3조(적용범위) 이 법은 다목 제3조(적용범위) -----적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 용수 · 공업용수 또는 환경개 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 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. <u>다만</u>, 제4조는 모 -----. <단서 삭제> 든 댐에 적용한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. 1.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

현 행	개 정 안
	2.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4조에
	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
	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
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	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
제1절 댐의 <u>건설</u>	제1절 댐의 <u>관리 등</u>
<u><신 설></u>	제4조(댐관리기본계획) ① 환경부
	장관은 댐관리 및 그 주변지역
	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다
	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관
	리기본계획(이하 "댐관리기본계
	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
	<u>다.</u>
	1. 댐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침
	2. 댐시설의 관리 계획
	3. 댐 저수 운영 및 물환경(「물
	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
	른 물환경을 말한다. 이하 같
	<u>다) 보전 계획</u>
	4. 댐 주변지역 보전 방안(제3조
	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댐에
	한정한다)
	5. 그 밖에 효율적인 댐관리를
	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<u>사항</u>
	② 환경부장관은 댐관리기본계

현 행	개 정 안
	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
	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
	에는 해당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.
	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
	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
	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
	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
	로 하여금 소관별로 댐관리에
	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
	경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댐
	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	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
	기관의 장 및 제3조제2항 각 호
	의 댐을 관리하는 자(해당 댐의
	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
	다)에게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
	•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
	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
	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
	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	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
	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
	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
	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
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

현 행	개 정 안
	한 후 「수자원의 조사・계획
	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	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
	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	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
	항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을 수
	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
	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
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
	<u>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</u>
	<u>다.</u>
	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
	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수립ㆍ
	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	령령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	제4조의2(댐관리세부시행계획) ①
	제3조제2항 각 호의 댐을 관리
	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
	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
	시행계획(이하 "세부시행계획"이
	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	② 제3조제2항제1호의 댐을 관
	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
	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
	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

현 행	개 정 안
	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
	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
	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	<u>니하다.</u>
	③ 제3조제2항제2호의 댐을 관
	리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세부
	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
	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
	우에는 미리 소관 중앙행정기관
	의 장과 협의하고, 환경부장관에
	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
	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
	하지 아니하다.
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	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
	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
	을 공개하여야 한다.
	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	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
	변경 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
	따른 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
	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조(댐건설장기계획) ① 환	제10조(댐건설의 적정성 검토) ①

혀 행

경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 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 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1. 댐건설의 기본방침
- 2. 각종 용수의 수급(需給) 전망
- 3. 수계별 댐건설계획(농업용 수댐은 저수량이 1천만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
- 4. 재원조달계획
- 5. 입지선정기준
- 6. 댐건설이 환경에 미치는

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
-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소판별로 대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하여야한다.

개 정 안

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대건설의 작정성을 미리 검토하고, 해당지역에 대건설이 예정되는 등 대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「수자원의 조사・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

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(이하 "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 <삭 제> 라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 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 정성을 미리 검토하고,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 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 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 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 ----하처유역수자워관리계획에 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의 반영 결과-----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 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 ⑥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 토의 방법・절차, 제5항에 -----제4항에 따 따른 협의회의 구성・운영 른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등에 -----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 <삭 제> 른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수 렴 후 제1항에 따라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

개

정 안

혂

행

현 행	개 정 안
에는 관할 시·도지사의 의	
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	
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수자	
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	
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	
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	
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	
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4조에	
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	
회의 심의를 거친 댐에 관한	
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	
<u>다.</u>	
⑧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장기	<u><</u> 삭 제>
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	
다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댐건	
설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	
<u>다.</u>	
⑨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	<u><삭 제></u>
는 경우에는 제3항, 제4항	
및 제7항을 준용한다. 다만,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	
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	
제3항, 제4항 및 제7항을 준	
용하지 아니한다.	
⑩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	<u><삭 제></u>

현 행	개 정 안
9항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	
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	
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	
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	
기관의 장과 관할 시·도지	
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
제7조(기본계획) ① 댐을 건설	<u>제11조</u> (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
하려는 자(이하 "댐건설사업	<u>ㅇ</u>)
시행자"라 한다)는 다음 각	
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	
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	
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	
다만, 제12호의 사항은 제41	
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	
경우에만 포함한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<u>제9조제1항에</u> 따라 개발	12. <u>제13조제1항에</u>
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것으	
로 보는 지역의 위치 및	
면적(제41조제4항에 따른	
댐 주변지역의 범위 내로 한정	
한다)	
13. (생 략)	1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u>제8조(</u> 실시계획) (생 략)	제12조(실시계획) (현행 제8조와 같

혅 행 개 정 안 음) 제9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· 제13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허가등의 의제) ① 환경부장 가등의 의제) ① -----관이나 시・도지사가 제7조 -----레11조제1항-제1항, 제2항 및 제5항에 따 라 기본계획을 수립・변경하 거나 승인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「지 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| 제9조제 1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,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 조제4항----시된 때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개발촉진지구에 관 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 (<u>2</u>) ---사가 제8조제1항, 제2항 및 ----제12조제1항-----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

현 행	개 정 안
립·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	
는 다음 각 호의 허가・신고	
·해제·협의·승인·인가·	
지정 등(이하 "인·허가등"	
이라 한다)이 있은 것으로	
보며, 같은 조 제3항에 따라	
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	
다음 각 호의 인·허가등의	
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	
본다.	
1. ~ 16. (생 략)	1. ~ 16. (현행과 같음)
③ 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	③
사는 제7조제1항제12호에 관	제11조제1항제12호 -
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	
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	
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	
을 수립·변경하거나 승인하	
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	
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	
한다. 이 경우 실시계획에	
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	
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	
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	
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	

현 행	개 정 안
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	
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	
루어진 것으로 본다.	
<u>제9조의2</u> (인·허가등 의제를	<u>제13조의2</u> (인·허가등 의제를 위
위한 일괄협의회) ① 환경부	한 일괄협의회) ①
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<u>제9</u>	
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	조제3항
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	
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	
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	
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	
수 있다.	.
②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	② <u>제13조제3항</u>
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	
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	
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.	
<u>제10조</u> (토지의 출입 등) (생	<u>제14조</u> (토지의 출입 등) (현행 제1
략)	0조와 같음)
제11조(토지등의 수용과 사용)	제15조(토지등의 수용과 사용) ①
① 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	2
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	제11조제4항
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「공	
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	
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	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	
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	
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,	
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	
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	
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	
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제12조</u> (댐건설 완료의 고시)	제16조(댐건설 완료의 고시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	4
고시가 있은 때에는 <u>제9조제</u>	제13조
<u>2항</u> 에 따라 의제되는 인·허	제2항
가등에 따른 해당 공사 또는	
사업의 준공검사, 준공인가와	
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	
본다.	
제12조의2(댐건설 완료의 고시	제16조의2(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
전 댐의 사용) (생 략)	댐의 사용) (현행 제12조의2와 같음)
<u>제13조</u> (공공시설 등의 귀속)	제17조(공공시설 등의 귀속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	③
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	
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	
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	
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	

현 행	개 정 안
청에 통지하여야 하며, 해당	
공공시설은 <u>제12조</u> 에 따른	제16조
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	
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	
각각 귀속된다.	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	4
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	
지를 등기할 때에는 <u>제8조</u> 에	<u>제12조</u>
따른 실시계획 고시와 <u>제12</u>	제16조
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	
로 「부동산등기법」에 따른	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	
갈음한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u>제14조</u> (국유·공유 재산의 처	제18조(국유・공유 재산의 처분)
분) (생 략)	(현행 제14조와 같음)
제2절 댐의 관리	<u><삭 제></u>
제15조(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	제5조(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)
자) (생 략)	(현행 제15조와 같음)
제16조(댐관리의 기본원칙)	제6조(댐관리의 기본원칙) (현행
(생 략)	제16조와 같음)
<u>제17조</u> (댐관리규정) ① 댐관리	<u>제7조(</u> 댐관리규정) ①
청은 <u>제16조</u> 에 따른 댐관리	<u>제6조</u>
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	
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.	

현 행	개 정 안
② <u>제15조제2항</u> 에 따라 댐의	② 제5조제2항
관리를 위탁받은 자(이하	
"댐수탁관리자"라 한다)는	
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댐관	
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
댐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	
우에도 또한 같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위해방지를 위한 조치)	제8조(위해방지를 위한 조치) (현
(생 략)	행 제18조와 같음)
제18조의2(댐의 관리를 위한	제9조(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) (현
사업) (생 략)	행 제18조의2와 같음)
<u>제18조의3</u> (댐의 평가) ① 환경	제9조의2(댐의 평가)
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	
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	
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	
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	
력,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	
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	
결과를 <u>댐건설장기계획</u> 등	<u></u> 「물관리기본법」 제27
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	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-
활용할 수 있다.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	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
관리에 관한 특례	관한 특례
제23조(수익자부담금 등) ①	제23조(수익자부담금 등) ①

현행	개 정 안
환경부장관은 <u>제12조제1항</u> 에	<u>제16조제1항</u>
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	
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	
하천의 유수(流水)를 이용하	
여 발전사업(「전기사업법」	
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	
을 말한다)을 하려는 자에게	
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	
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	
자의 예상 수익(댐건설 완료	
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	
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	
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23	
조의2에서 같다)의 범위에서	
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	
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	
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	
정・부과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4조(댐사용권의 설정) ①	제24조(댐사용권의 설정) ① ~ ③
~ ③ 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	④ <u>제16조</u>
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	
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	
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	

현 행	개 정 안
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	
한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31조(댐사용권에 대한 취소	제31조(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)
등) 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	⑤
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	
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	
는 <u>제7조제4항</u> 에 따라 고시	- <u>제11조제4항</u>
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	
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	
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	
제38조(다목적댐의 인정 등)	제38조(다목적댐의 인정 등) ①
① 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	②
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	
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	
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7조제1항제2호</u> 부터 제4	2. 제11조제1항제2호
호까지의 사항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45조(환경부장관 등의 권한)	제45조(환경부장관 등의 권한) ①

현 행	개 정 안
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	
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	
우에는 「하천법」과 「골재	
채취법」에도 불구하고 사업	
시행지와 <u>제12조제1항</u> 및 제	제16조제1항
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	
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	
등을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	
또는 시장・군수가 건설하는	
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·도	
지사 또는 시장・군수가 다	
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,	
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	<u>제5조제2항</u>
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	
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댐수탁관리자가 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9조(벌칙) <u>제18조</u> 를 위반하	제49조(벌칙) <u>제8조</u>
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	
거나 치수(治水)에 장해를	
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	
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	
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	

현 행	개 정 안
다.	.
제51조(벌칙) 행정청이 아닌	제51조(벌칙)
자로서 제10조제3항부터 제5	제14조제3항
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	
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	
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	
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	
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	
처한다.	
제53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	제53조(과태료) ①
유 없이 <u>제10조제1항</u> 에 따른	제14조제1항
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	
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	
태료를 부과한다.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